

# 행정자치부

## 주의요구

제 목 조림지 풀베기사업 적기 미실행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, 원주시, 횡성군, 영월군, 철원군, 화천군, 인제군, 양양군

내 용

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르면 산림을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의 기능별 관리지침(산림청 훈령 「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」)에 따라 소관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.

산림청 「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」 III-1-나에 따르면 지역별로 풀베기사업 권장시기를 정하여 조림목에 대한 조림 성공률 제고 및 경제적·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육성을 위해 아래 [표]의 지역별 풀베기 권장시기와 같이 풀베기사업의 작업시기를 1회 실행지는 5월~7월에 실시하고, 2회 실행지의 경우는 8월에 추가로 실시하고, 9월 초순 이후의 풀베기는 피하도록 하고 있다.

[표] 지역별 풀베기 권장시기

지 역 별	풀베기 권장시기	비 고
온대 남부	5월 중순 ~ 9월 초순	
온대 중부	5월 하순 ~ 8월 하순	
고산 및 온대북부	6월 초순 ~ 8월 중순	

또한, 강원도(○○○○과) 산림소득분야 주요 업무추진 계획(2012~2015)에서도 풀베기사업은 시기사업으로 적기에 실행하여 조림목 피해방지 및 사업의

효과 극대화 도모토록 하고, 풀베기 사업시기를 경과하여 조림목 피해 및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

강원도는 고산 및 온대북부지역에 해당하고 있어 풀베기사업을 6월 초순부터 8월 중순까지 실행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해야 한다.

이에 따라 강원도 ○○○○연구원, 원주시 및 횡성군, 영월군, 철원군, 화천군, 인제군, 양양군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조림지 풀베기사업 총 1,706개소, 2,937.64ha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.

그러나, 강원도 지역은 고산 및 온대북부에 해당되어 풀베기사업은 6월 초순에서 8월 중순까지 완료하여야 하며, 늦어도 8월 말까지 적기 실시하여 풀베기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데도

최근 5년간(2012~2016년) 1,706개소 2,937.64ha를 9월 중순 이후부터 11월 초순까지 풀베기사업을 실행함으로써 당초 풀베기 사업추진 목적과 달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.

**조치할 사항**            강원도지사, 원주시장, 횡성군수, 영월군수, 철원군수, 화천군수, 인제군수, 양양군수는

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3항에 따라 풀베기사업을 적기에 실행하여 사업효과가 제고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